

CLOSING ACCOUNTS &  
TAX ADJUSTMENT OF CORPORATION

2021 법인세 신고대비  
개정 및 실무이슈

# HIT THE SPOT SERIES 3

---

법인결산과 세무조정시  
주요 개정세법

---



YOUR BEST HRD PARTNER  
**씨에프오아카데미**  
www.cfoia.kr

# [HIT THE SPOT SERIES 3] 법인결산과 세무조정시 주요 개정세법

## 1 법인세분야

[법인세법·시행령·시행규칙]

### 1. 결손보전 시 익금불산입(수입금액 제외)하는 자산수증이익에 국고보조금 등 제외

(소득법 § 26②, 법인법 § 18)

종 전	개 정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□ 익금불산입(수입금액 제외) 되는 자산수증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 총당한 다음의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    &lt;단서 신설&gt;</li> </ul> </li> <li>-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 감소액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□ 익금불산입(수입금액 제외) 범위 축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좌 등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좌 등)</li> </ul> </li> <li>• 법인사업자 및 복식부기 의무자인 개인사업자가 지급받은 국고보조금 등은 제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좌 등)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/ul>

<개정이유> 국고보조금 등과 관련한 세법규정 합리화

<적용시기> '20.1.1.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(과세기간) 분부터 적용

<경과규정> '10.1.1.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(과세기간)에 발생한 결손금 보전에 총당한 경우에는 종전규정 적용

## 2.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률 적용기준 변경 (법인법 § 18의2, § 18의3)

종 전			개 정		
□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• 일반내국법인 익금불산입률			□ “초과”를 “이상”으로, “이하”를 “미만”으로 변경 • 일반내국법인 익금불산입률		
피출자법인 구분	출자비율	익금불산입률	피출자법인 구분	출자비율	익금불산입률
주권상장법인	100%	100%	주권상장법인	100%	100%
	100% 미만 30% <b>초과</b>	50%		100% 미만 30% <b>이상</b>	50%
	30% <b>이하</b>	30%		30% <b>미만</b>	30%
주권상장법인 외의 법인	100%	100%	주권상장법인 외의 법인	100%	100%
	100% 미만 50% <b>초과</b>	50%		100% 미만 50% <b>이상</b>	50%
	50% <b>이하</b>	30%		50% <b>미만</b>	30%
• 지주회사 익금불산입률			• 지주회사 익금불산입률		
자회사 구분	출자비율	익금불산입률	자회사 구분	출자비율	익금불산입률
주권상장법인	40% <b>초과</b>	100%	주권상장법인	40% <b>이상</b>	100%
	40% <b>이하</b> 30% <b>초과</b>	90%		40% <b>미만</b> 30% <b>이상</b>	90%
	30% <b>이하</b>	80%		30% <b>미만</b>	80%
주권상장법인 외의 법인	80% <b>초과</b>	100%	주권상장법인 외의 법인	80% <b>이상</b>	100%
	80% <b>이하</b>	90%		80% <b>미만</b>	90%
	50% <b>초과</b>			50% <b>이상</b>	
	50% <b>이하</b>	80%		50% <b>미만</b>	80%

〈개정이유〉 「공정거래법」 등 관련 법률과 요건을 통일시켜 법률간 정합성 제고  
 〈적용시기〉 '20.1.1.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

## 3. 기부금 이월공제 계산방법 조정 (법인법 § 24, 소득령 § 79)

종 전		개 정	
□ 기부금 공제 순서(①→②) ① 각 사업연도(과세기간)에 지출한 기부금을 우선 공제 ② 남은 기부금 공제한도 내에서 이월된 기부금 공제* *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10년간 이월 공제가능		□ 기부금 공제 순서 변경 ① 이월된 기부금을 우선 공제 ② 남은 기부금 공제한도 내에서 각 사업연도(과세기간)에 지출한 기부금 공제	

〈개정이유〉 기부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부금 공제방식 보완  
 〈적용시기〉 '20.1.1.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

4. 접대비 한도 상향(법인법 §25의4, 소득법 §35)

종 전		개 정	
<p>□ 접대비 손금(필요경비) 산입한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기본한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일반기업 1,200만원</li> <li>- 중소기업 2,400만원</li> </ul> </li> <li>• 수입금액별 추가한도</li> </ul>		<p>□ 손금(필요경비) 산입한도 상향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중소기업 기본한도 상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좌 등)</li> <li>- 중소기업 3,600만원</li> </ul> </li> <li>• 수입금액별 추가한도 상향</li> </ul>	
수입금액 구간	한 도	수입금액 구간	한 도
100억원 이하	0.2퍼센트	100억원 이하	0.3퍼센트
100억원 초과	2천만원 + (100억원 초과분의 0.1퍼센트)	100억원 초과	3천만원 + (100억원 초과분의 0.2퍼센트)
500억원 이하		500억원 이하	
500억원 초과	6천만원 + (500억원 초과분의 0.03퍼센트)	500억원 초과	1억1천만원 + (500억원 초과분의 0.03퍼센트)

〈개정이유〉 중소기업 세부담 경감 및 경제활성화

〈적용시기〉 '20.1.1.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(과세기간) 분부터 적용

5.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적용 제외대상 추가(법인법 § 27의2①, 법인령 § 50의2①)

종 전		개 정	
<p>□ 업무용 승용차 손금불산입 특례*</p> <p>*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사용 방지를 위해 감가상 각(리소비용)한도 제한(연간 800만원), 운행기록부 작성 및 임직원전용보험 가입 의무 등을 규정한 제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적용대상)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인 승용자동차</li> <li>• (적용제외 대상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*이 정하는 것</li> </ul> </li> </ul> <p>* (시행령) 운수업, 자동차 판매업, 자동차 임대업, 운전학원업 등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(추 가)</p>		<p>□ 제외 대상 추가</p> <p>(좌 등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*</li> </ul> <p>* (시행령) 「자동차관리법 제27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득한자율주행자동차</p>	

〈개정이유〉 사적사용 여지가 적은 연구개발목적 차량에 대한 납세협력 부담 완화  
 〈적용시기〉 '20.1.1.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

6. 정규증빙 미수취 가산세 대상금액 명확화(소득법 § 81의6, 법인법 § 75의5)

종 전	개 정
□ 정규증빙 미수취 가산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대상)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정규증빙* 미수취 또는 사실과 다른 증빙서류 수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신용카드매출전표, 현금영수증, 세금계산서, 계산서 등</li> </ul> </li> <li>• (가산세) 미수취 등 금액의 2%</li> </ul>	□ 가산세 대상금액 명확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좌 동)</li> <li>• 미수취 등 금액 중 손금·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금액의 2%</li> </ul>

〈개정이유〉 가산세 부과대상을 손금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금액으로 명확화

7. 사업재편기업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확대(법인령 § 10㉠)

종 전	개 정
□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원칙)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%</li> <li>• (예외)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%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중소기업</li> <li>- 회생계획 기업개선계획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중인 법인</li> <li>-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유동화 거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</li> </ul> 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〈추 가〉</p>	□ 공제한도 예외대상 확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좌 동)</li> <li>• 예외법인 추가</li> </ul> <div style="border-left: 1px solid black; border-right: 1px solid black; padding: 0 10px; margin: 10px 0;">                         (좌 동)                     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사업재편계획*을 이행중인 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「기업활력법」에 따른 사업재편계획</li> </ul> </li> </ul>

〈개정이유〉 생산성 향상 등을 목적으로 사업재편계획을 이행중인 법인을 지원  
 〈적용시기〉 '20.1.1.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

8. 중소·중견기업이 해외법인 주재원에 지급한 인건비 손금산입 (법인령 §19)

종 전	개 정
<p>□ 손금의 범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원칙)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</li> <li>• (범위)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판매한 상품·제품에 대한 원료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</li> <li>- 인건비</li> </ul> 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- 유무형자산 감가상각비 등</p>	<p>□ 인건비 손금산입 범위 확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좌 동)</li> <li>• 해외 주재원 인건비 포함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좌 동)</li> <li>- 내국법인(중소·중견기업에 한정)이 해외법인(100% 출자한 법인으로 한정)에 파견한 주재원에게 지급한 인건비*</li> </ul> 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* 내국법인 및 해외법인이 해당 주재원에 지급한 인건비 총액의 50% 미만으로 지급한 경우로 한정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- (좌 동)</p>

〈개정이유〉 해외주재원에 지급하는 인건비 세제지원

〈적용시기〉 '20.1.1.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

9. 대손금 손금산입 범위 확대 (법인령 § 19의2①, 소득령 § 55②)

종 전	개 정
<p>□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한 채권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, 미수금, 어음, 수표 등</li> <li>• 채무자의 파산, 강제집행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</li> <li>• 회생계획인가의 결정,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</li> <li>•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채권 가액 20만원 이하인 소액 채권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〈추 가〉</p>	<p>□ 중소기업 등 대손금 손금산입 범위 확대</p> <div style="border-left: 1px solid black; border-right: 1px solid black; padding: 0 10px; margin: 10px 0;"> <p>(좌 동)</p> 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20만원 → 30만원</li> </ul>

〈추 가〉

-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으로서 회수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
  - 다만,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은 제외

〈개정이유〉 대손금이 발생한 중소기업 등 세부담 경감

〈적용시기〉 '20.1.1.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(과세기간) 분부터 적용

### 10. 소액수선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부담 완화(법인령 § 31③, 소득령 § 67)

종 전	개 정
□ 수선비 세무처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자본적 지출* : 자산계상 후 감가상각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내용연수 연장 또는 자산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예외) 즉시 손금(필요경비) 산입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300만원 미만 수선비</li> <li>• 자산가액의 5%미만 수선비</li> <li>• 3년미만 주기의 수선비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li>• 수익적 지출 : 즉시 손금(필요경비) 산입</li> </ul>	□ 즉시손금(필요경비) 산입범위확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좌 동)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300만원 → 600만원</li> </ul> </li> <li>• (좌 동)</li> </ul>

〈개정이유〉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여 소액수선비 기준액 상향

〈적용시기〉 '20.1.1.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(과세기간) 분부터 적용

### 11. 즉시상각 적용자산에서 금형 제외(법인령 § 31⑥, 소득령 § 67⑦)

종 전	개 정
□ 즉시상각 대상자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원칙)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 자산</li> <li>• (예외) 취득가액과 무관하게 포함하는 자산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어구(어선용구 포함), 영화필름, 가구, 전기 가구, 가스기기, 시험기기, 측정기기 등</li> <li>- 공구(금형을 포함)</li> </ul> </li> </ul>	□ 즉시상각 적용자산 범위 조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좌 동)</li> <li>• 금형을 즉시상각 적용자산에서 제외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좌 동)</li> <li>- 공구</li> </ul> </li> </ul>

〈개정이유〉 다른 세법규정에서 공구의 범위에 금형을 포함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

〈적용시기〉 '20.1.1.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(과세기간) 분부터 적용

## 12.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및 사후관리 합리적 개선

① 지정단계 보완(법인령 §39, 법인칙 §18의3)

종 전	개 정
<p>□ 지정기부금단체 신청·추천 절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지정신청) 비영리법인 등 → 주무관청</li> <li>• (지정추천) 주무관청 → 기재부 (신 설)</li> </ul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</li> <li>• 정관상 요건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수입의 공익관련 사용</li> <li>- 해산시 잔여재산 국가 등 귀속 등</li> </ul> </li> <li>• 홈페이지 개설 (추 가)</li> </ul> <p>□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기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6년</li> </ul>	<p>□ 신청·추천기관 변경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지정신청) 비영리법인 등 → 국세청(소재지 관할세무서)</li> <li>• (지정추천) 국세청 → 기재부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국세청장은 추천신청서류 검토 후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단체에 대하여 매분기 종료일부터 2개월 전까지 추천서 등*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</li> <li>* 추천단체의 법인명, 대표자, 사업내용 등을 기재한 기부금단체 추천서 및 추천신청서류</li> </ul> </li> </ul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지정요건 강화</li> <li>• (좌 등)</li> </ul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홈페이지 개설요건 강화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공익위반사항에 대한 공익제보가 가능하도록 주무관청 국민신문고 국세청 등 1개 이상 홈페이지 연결요건 추가</li> </ul> </li> </ul> <p>□ 지정기간 이원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신규지정 : 3년</li> <li>• 재지정 : 6년*</li> <li>* 신규지정 후 사후관리 결과 공익성이 부합되는 단체만 재지정</li> </ul>

〈개정이유〉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체계 개선 및 지정요건 강화

〈적용시기〉 '21.1.1. 이후 지정기부금단체등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



② 사후관리단계 보완(법인령 §39)

종 전	개 정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□ 지정기부금단체 사후관리 절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기부금단체(의무이행여부 보고)</li> <li>→ 주무관청(점검 및 결과 통보)</li> <li>→ 국세청</li> </ul> </li>   <li>□ 지정기부금단체 사후관리 의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기부금모금 및 활용실적을 기부금단체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</li> <li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추 가)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□ 사후관리 절차 변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기부금단체(의무이행여부 보고)</li> <li>→ 국세청(소재지 관할세무서)</li> </ul> </li>   <li>□ 사후관리기관자료요구근거마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좌 등)</li> <li style="padding-left: 40px;">- 공시내용 등에 오류 등이 있어 국세청장이 기부금 지출내역 요구시 제출</li> </ul> </li> </ul>

〈개정이유〉 지정기부금단체 사후관리 실효성 제고

〈적용시기〉 '21.1.1.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사후관리분부터 적용

③ 지정취소단계 보완(법인령 §39)

종 전	개 정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□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사항*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의무이행사항 위반시 지정취소 가능</li> <li>• 수입을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</li> <li>•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 등</li> <li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추 가)</li> </ul> </li>   <li>□ 지정취소 예고통지 및 의견 제출 절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예고통지) 국세청 → 주무관청 → 지정기부금단체 등</li> <li>• (의견제출) 지정기부금단체 등</li> <li>→ 주무관청 → 국세청</li> <li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신 설)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□ 의무이행사항 추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div style="display: flex; align-items: center; margin-left: 20px;"> <div style="border-left: 1px solid black; border-right: 1px solid black; height: 40px; margin-right: 5px;"></div> <div style="margin-left: 5px;">(좌 등)</div> 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직전 2년간 고유목적사업 지출내역이 있을 것</li> </ul> </li>   <li>□ 절차 변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국세청 → 지정기부금단체 등</li> <li>• 지정기부금단체 등 → 국세청</li> </ul> </li>   <li>□ 주무관청·과세관청간 통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지정·취소시 통보) 국세청 → 주무관청</li> <li>• (설립허가 취소, 공익목적 위반사항 적발시 통보) 주무관청 → 국세청</li> </ul> </li> </ul>

〈개정이유〉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취소절차 등 개선

〈적용시기〉 '21.1.1.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사후관리분부터 적용

※ 주무관청·과세관청간 통지는 '21.1.1. 이후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 및 취소되거나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분부터 적용

13.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완화(법인령 §50의2⑦, 소득령 §78의3⑥)

종 전	개 정
<p>□ 업무용 승용차 관련 손금(필요경비)* 처리</p> <p>* 감가상각비, 임차료, 유류비, 자동차세, 보험료, 수리비, 통행료 등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1,000만원 이하 : 운행기록부 작성 없이도 전액손금(필요경비) 산입</li> <li>• 1,000만원 초과 : 운행기록부를 작성하고 업무와 관련되는 비용만 손금(필요경비) 산입</li> </ul>	<p>□ 운행기록부 미작성시 손금 (필요경비) 산입금액 상향 조정</p> <p>• 1,000만원 → 1,500만원</p>

〈개정이유〉 운행기록부 작성에 따른 납세협력 부담을 완화

〈적용시기〉 '20.1.1.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(과세기간) 분부터 적용

14. 업무용승용차 이월공제 방식 조정(법인령 § 50의2⑪·⑬, 소득령 § 78의3⑦ ⑨)

종 전	개 정
<p>□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 이월공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자가차량) 연간 800만원 한도로 손금(필요경비)산입</li> <li>• (임차차량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임차종료 후 1~9년) 연간800만원 한도로 손금(필요경비)산입</li> <li>- (임차종료 후 10년) 잔여액 전부 손금(필요경비)산입</li> </ul> </li> </ul>	<p>□ 임차차량 연도별 이월공제 금액 조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자 동)</li> <li>• (임차차량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임차종료 후 연간 800만원 한도로 손금(필요경비)산입*</li> <li>* 10년 이후에도 연간 800만원 한도로 손금(필요경비)산입</li> </ul> </li> </ul>
<p>□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이월공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처분 후 1~9년) 연간 800만원 한도로 손금(필요경비)산입</li> <li>• (처분 후 10년) 잔여액 전부 손금(필요경비)산입</li> </ul>	<p>□ 연도별 이월공제 금액 조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처분 후 연간 800만원 한도로 손금(필요경비)산입*</li> <li>* 10년 이후에도 연간 800만원 한도로 손금(필요경비)산입</li> </ul>

〈개정이유〉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·처분손실 이월공제 합리화

〈적용시기〉 2020.2.11. 이후 처분(리스종료)한지 10년이 도래한분부터 적용

15.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 합리화(법인령 §56)

종 전	개 정
<p>□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 :</p> <p>① + (②×50%*, 80%** , 100%***)</p> <p>* 일반 비영리법인</p> <p>** 고유목적사업지출액 중 50%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출한 법인</p> <p>*** 학교법인, 사회복지법인, 고유목적 사업지출액 중 80%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출한 법인 등</p> <p>① 이자·배당 소득금액 등: 100%</p> <p>– 금융보험업 영위 비영리법인의 일시적 자금예치에 따른 이자소득금액 포함</p> <p>② 수익사업소득금액 - 이월결손금 - 법정기부금 : 50%</p>	<p>□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 조정 등</p> <p>① “일시적” 자금예치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규정</p> <p>– 일시적 자금예치 → 3개월 이하 자금예치*</p> <p>* 계약기간 3개월 미만인 금융상품(계약기간이 없는 요구불예금 포함)</p> <p>② 수익사업소득금액 - 경정으로 증가된 소득금액 중 해당 법인의 특수관계인에게 상여 및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금액* - 이월결손금(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적용받는 법인의 경우에는 공제한도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)</p> <p>– 법정기부금</p> <p>* 매출누락, 횡령, 사적비용 등으로 상여 및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</p>

〈개정이유〉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지원 및 비영리법인 자산의 사적유용 방지

〈적용시기〉 '20.1.1.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

※ 일시적 자금예치 의미 구체화 개정은 2020.2.11.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

16. 출연금 취득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적용대상 확대(법인령 § 64⑥)

종 전	개 정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□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가액 손금산입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다음의 법률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아 사업용자산 취득시 보조금 상당액 손금산입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, 「지방재정법」, 「농어촌 전기공급사업촉진법」, 「전기사업법」 등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추 가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□ 손금산입 범위 확대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대상 법률 추가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좌 동)</li> <li>-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, 「환경정책기본법」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/ul>

〈개정이유〉 「산업재해보상법」 및 「환경정책기본법」에 따른 공익 출연사업 지원

〈적용시기〉 '20.1.1. 이후 자산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

17.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서 유동화전문회사 등 제외(법인령 §97의4②)

종 전	개 정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□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대상 법인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제출 대상)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소규모 법인*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상시근로자 5인미만, 지배주주 등 지분 50% 초과, 부동산임대업 또는 임대·이자·배당소득이 매출의 70% 이상</li> </ul> </li> <li>②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 후 3년 이내인 법인</li> </ul> </li> <li>• (제출 면제)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은 법인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□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대상 조정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유동화전문회사 등* 제외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「법인세법」 제51조의2에 따른 유동화 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대상 기업</li> </ul> </li> <li>② (좌 동)</li> </ul> </li> <li>• (좌 동)</li> </ul>

〈개정이유〉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것이 목적인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제외

〈적용시기〉 2020.2.11.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

18. 기타사외유출 소득처분대상 기부금 범위 명확화(법인령 § 106)

증 전	개 정
□ 기타사외유출 소득처분대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법 제24조(기부금의 손금불산입)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</li> <li>※ 법정·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뿐 아니라 비지정기부금, 기부금 귀속시기 등으로 손금 불산입된 금액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</li> </ul>	□ 기타사외유출 소득처분 대상 기부금범위 명확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법 제24조에 따라 법정·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를 초과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</li> </ul>

〈개정이유〉 기타사외유출 소득처분 대상은 법정·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초과분에 한정됨을 명확화

19. 연결법인 기부금 이월액 손금산입된 금액의 각 법인별 배분방법 보완(법인령 § 120의20)

증 전	개 정
□ 기부금 이월액 손금산입된 금액의 각 법인별 배분방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연결납세에 따른 기부금 한도에서 당해연도 기부금 지출액을 공제하고 남은 부분을 각 법인별로 이월액 비율에 따라 배분</li> </ul>	□ 법률개정에 따른 규정 보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연결납세에 따른 기부금 한도 중 먼저* 손금산입되는 기부금 이월액만큼을 각 법인별로 이월액 비율에 따라 배분</li> <li>* 기부금 이월액이 당해연도 지출액보다 먼저 공제되므로 당해연도 기부금 지출액 공제없이 바로 계산</li> </ul>

〈개정이유〉 일반법인 기부금 공제순서 변경에 따라 연결법인 기부금 이월액 배분방법 보완  
 〈적용시기〉 2020.2.11.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

20.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채권 범위 조정(법인칙 § 10의4)

증 전	개 정
□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회수 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의 범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「민사소송법」에 따른 화해</li> <li>• 「민사소송법」에 따른 화해권고 결정</li> <li>• 「민사조정법」에 따른 결정</li> </ul> 〈추 가〉	□ 손금산입 채권 범위 확대 <div style="border-left: 1px solid black; border-right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: 10px 0;">(좌 동)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「민사조정법」에 따른 조정</li> </ul>

〈개정이유〉 「민사조정법」상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점을 감안  
 〈적용시기〉 규칙 시행일 이후 조정이 성립되는 분부터 적용

21. 리스료 손익귀속시기 적용규정 정비(법인칙 § 35)

종 전	개 정
<p>□ 리스료의 귀속사업연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리스이용자가 리스로 인하여 수입하거나 지급하는 리스료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기업회계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름</li> </ul>	<p>□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받는 법인의 운용리스자산에 대한 리스료의 경우에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손금에 산입</li> <li>※ 리스회계기준 변경에 따라 '19년부터 K-IFRS1017호 → 제1116호로 개정</li> </ul>

〈개정이유〉 K-IFRS 리스회계기준이 변경되었으나, 세법상 리스처리기준은 종전과 동일하므로 이에 맞추어 규정 정비

〈개정이유〉 규칙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

22. 중소기업 근로자 주택구입 대여금 등에 대한 지원(법인칙 § 44)

종 전	개 정
<p>□ 업무무관가지급금* 제외 대상</p> <p>* 회사의 업무와 무관하게 대여한 금액으로 인정 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 대상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직원에 대한 월정급여액의 범위에서의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</li> <li>• 직원에 대한 경조사비 또는 학자금 대여액 등 (추 가)</li> </ul>	<p>□ 제외대상 확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좌 동)</li> <li>• (좌 동)</li> <li>• 중소기업의 직원에 대한 주택구입 전세자금 대여금</li> </ul>

〈개정이유〉 근로자의 주택구입·전세자금을 대여하는 중소기업 지원

〈적용시기〉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

**【조세특례제한법·시행령·시행규칙】**

**1.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확대 등 (조특법 § 8의3)**

종 전	개 정
<p>□ 내국법인이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등 출연시 세액공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적용대상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협력중소기업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·기술신용보증기금에 출연</li> <li>- 대·중소기업협력재단에 출연</li> </ul> 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〈추 가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공제율) 출연금의 10%</li> <li>• (적용기한) '19.12.31.</li> </ul>	<p>□ 적용대상 확대 및 기한 연장</p> <div style="border-left: 1px solid black; border-right: 1px solid black; padding: 0 10px; margin: 10px 0;">(좌 동)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중소기업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</li> </ul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좌 동)</li> <li>• '22.12.31.</li> </ul>
<p>□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에 연구 시험용자산 등을 무상으로 임대시 세액공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공제율) 취득가액의 3%</li> <li>• (적용기한) '19.12.31.</li> </ul>	<p>□ 적용기한 연장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좌 동)</li> <li>• '22.12.31.</li> </ul>
<p>□ 내국인이 수탁·위탁거래의 상대방인 수탁기업 연구시설 등에 투자시 세액공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공제율) 투자금액의 1% (중견 3%, 중소 7%)</li> <li>• (적용기한) '19.12.31.</li> </ul>	<p>□ 적용기한 연장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좌 동)</li> <li>• '22.12.31.</li> </ul>

〈개정이유〉 대·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지원  
 〈적용시기〉 '20.1.1. 이후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

## 2. 벤처캐피탈 양도차익 비과세 대상 확대(조특법 § 13)

종 전	개 정
<p>□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*의 벤처기업 등 출자에 따른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비과세</p> <p>*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, 창업기획자,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 벤처투자특화법인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적용요건)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벤처기업 등에 신규출자를 통해 취득한 주식, 출자지분</li> </ul> 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추 가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출지방식) 직·간접 출자</li> <li>• (적용기한) '20.12.31.</li> </ul>	<p>□ 비과세 대상 확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적용요건 완화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좌 동)</li> <li>-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엔젤투자자가 보유한 지분(舊株) 인수시도 적용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대상) 엔젤투자자가 3년이상 보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</li> <li>• (인수한도) 벤처기업 등의 유상증자시 해당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등이 납입한 증자대금의 10% 범위 내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] (좌 동)</p>

<개정이유> 엔젤투자자의 벤처투자자금 회수를 지원(벤처투자의 선순환 유도)하기 위해 엔젤투자자 지분 인수시도 지원

<적용시기> '20.1.1. 이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

## 3. 내국법인 벤처기업 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(조특법 § 13의2)

종 전	개 정
<p>□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시 출자금액 법인세 세액공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공제대상) 창업자, 벤처기업, 신기술사업자,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대한 직접출자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을 통한 간접출자</li> <li>• (지원내용) 출자금의 5% 세액공제</li> <li>• (요건) 다음의 방법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(구주 매입 제외)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설립시 자본금 납입</li> <li>- 설립 후 7년 이내 유상증자 납입</li> </ul> </li> </ul> <p>• (적용기한) '19.12.31.</p>	<p>□ 적용기한 연장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] (좌 동)</p> <p>• '22.12.31.</p>

<개정이유> 창업자,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 확대를 지원



#### 4. 내국법인의 소재부품장비기업 공동출자시 세액공제 신설 (조특법 §13의3, 조특령 §12의3)

종 전	개 정
<p>〈신 설〉</p>	<p>□ 내국법인의 협력사 공동출자에 대한 세액공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적용대상) 둘 이상의 내국법인*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 부품 장비** 중소 중견기업에 공동***으로 출자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내국법인 상호간, 내국법인과 피출자법인간 특수관계인 경우 제외</li> <li>** 「소재·부품·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」 제16조에 따른 “특화선도기업등”</li> <li>*** 공동출자 : ① 투자기업과 투자대상기업이 공동투자에 대해 체결한 협약(MOU)에 따라 투자할 것, ② 공동투자에 참여한 내국법인이 투자대상기업의 유상증자금액의 25% 이상을 각각 납입할 것</li> </ul> </li> <li>• (출자범위) 내국법인이 피출자법인의 유상증자 참여</li> <li>• (세액공제율) 지분 취득가액의 5%</li> <li>• (사후관리)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액 공제액에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유상증자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피출자법인이 출자금액의 80% 이상을 연구·인력개발 또는 설비 투자*로 지출하지 않는 경우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연구 인력개발비(조특법 §10조), 연구시험용시설 및 직업훈련용 시설 투자(조특법 §25조①1호), 생산성향상시설 투자(조특법 §25①6호),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투자(조특법 §25의5)</li> </ul> </li> <li>- 내국법인이 지분 취득 후 5년 이내에 피출자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경우</li> <li>- 내국법인이 지분 취득 후 4년 이내에 해당지분 처분시*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단, 이 경우는 처분주식에 상당하는 세액공제액 및 이자상당액만 추징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li>• (적용기한) '22.12.31.</li> </ul>

〈개정이유〉 소재·부품·장비기업과 수요기업간 상생협력 지원

〈적용시기〉 '20.1.1. 이후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

5. 소재 부품 장비 관련 외국법인 인수시 세액공제 신설 (조특법 § 13의3, 조특령 § 12의3)

종 전	개 정
<p>〈신 설〉</p>	<p>□ 소재 부품 장비 관련 외국법인 인수시 세액공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적용대상) 내국법인*이 소재 부품 장비 외국법인** 주식 지분취득 또는 소재 부품 장비 사업 자산양수시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① 내국법인의 특수관계인이 외국법인인 경우,</li> <li>② 외국법인의 특수관계인이 내국법인인 경우는 제외</li> </ul> </li> <li>** 특정 소재 부품 장비 품목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50% 이상인 외국법인(소재 부품 장비 품목은 시행규칙에서 규정할 예정)</li> </ul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공제율) 인수금액의 5% (중견 7%, 중소 10%)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공제대상 한도(건당) : Min[총 인수금액, 5천억원*]</li> <li>* 최근 3년내 동일기업으로부터 소재·부품·장비 사업부문을 여러차례 인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수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도 적용</li> </ul> </li> <li>• (적용요건)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법인간 M&amp;A</li> <li>- 피인수법인의 출자총액의 50%(또는 30%+경영권) 이상</li> <li>- 인수법인이 취득한 주식등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보유</li> </ul> </li> <li>• (사후관리) 인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년까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시 세액공제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가 인수법인 또는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경우</li> <li>- 피인수기업이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</li> <li>- 인수기업의 피인수기업 지분비율이 인수일이 속한 사업연도 종료일보다 낮아지는 경우*</li> <li>* 기준비율(50% 또는 30%+경영권) 미만으로 낮아지면 세액공제액 전액, 기준비율 이상 유지되면 줄어든 비율 상당액을 추징</li> </ul> </li> <li>• (적용기한) '22.12.31.</li> </ul>

〈개정이유〉 소재·부품·장비 관련 외국법인에 대한 M&A 지원

〈적용시기〉 '20.1.1. 이후 인수하는 분부터 적용

6.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 특례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(조특법 §28의3, 조특령 §25의3)

종 전	개 정
<p>□ 설비투자자산의 가속상각 특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상각률 범위)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중소·중견기업) 기준내용연수*의 50%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「법인세법」, 「소득세법」에서 자산의 유형 및 업종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 기준 감가상각기간</li> </ul> </li> <li>- (대기업) 기준내용연수의 50%</li> </ul> </li> <li>• (대상자산)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중소·중견기업) 사업용 고정자산</li> <li>- (대기업)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연구·인력개발 시설</li> <li>•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&lt;추 가&gt;</li> <li>&lt;추 가&gt;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li>• (적용기한) '19.12.31.</li> </ul>	<p>□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중소·중견기업의 상각률 확대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중소·중견기업) 75%</li> <li>- (좌 동)</li> </ul> </li> <li>• 대기업의 대상자산 확대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좌 동)</li> <li>- (대기업)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좌 동)</li> <li>• (좌 동)</li> <li>• 생산성향상시설</li> <li>• 에너지절약시설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li>• '20.6.30.</li> </ul>

<개정이유> 투자 활성화 및 혁신성장 지원

<적용시기> (상각률 범위 및 대상자산 확대) '19.7.3.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

7. 지주회사 설립·전환시 현물출자등의 과세특례 조정(조특법 §38의2)

종 전	개 정
<p>□ 지주회사 설립 전환을 위하여 주식 현물출자등의 과세특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현물출자등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이연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 처분시까지 과세이연</li> </ul> </li> <li>• (적용기한) '21.12.31.</li> </ul>	<p>□ 거치 분할 납부방식으로 변경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현물출자등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·양도세는 4년 거치 3년 분할 납부</li> <li>• '22.1.1.~'24.12.31.</li> </ul>

<개정이유> 주주의 현물출자등 과세특례 제도를 합리적으로 보완

<적용시기> '22.1.1. 이후현물출자하거나주식을교환하는분부터적용

※ (경과조치) '21.12.31. 이전분에 대해서는 종전규정 적용

8. 공모리츠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(조특법 §97의8)

종 전	개 정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□ 공모리츠*에 토지·건물 현물 출자시에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「부동산투자회사법」 제49조의3 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</li> <li>• (현물출자 기한) 영업인가일로부터 1년 이내</li> <li>• (사후관리)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은 취득한 주식의 처분시점에 익금산입</li> <li>• (적용기한) '19.12.31.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□ 적용기한 연장</li> </ul> <div style="margin-left: 20px;"> <p>⌈ (좌 등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'22.12.31.</li> </ul> </div>

〈개정이유〉 공모리츠 활성화 지원

9.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대상에서 유동화전문회사 등 제외

(조특법 §100의32①, 조특령 §100의32②)

종 전	개 정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□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대상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기업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은 제외*</li> <li>* (시행령) 중소기업, 비영리법인</li> </ul> </li> <li>• 상호출자제한기업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□ 적용제외 대상 추가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좌 등)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·비영리법인 및 유동화전문회사 등은 제외</li> </ul> </li> <li>• (좌 등)</li> </ul> </li> </ul>

〈개정이유〉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사업목적 등을 고려하여 제외

〈적용시기〉 '20.1.1.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

10. 톤세 적용기한 연장(조특법 § 104의10)

종 전	개 정
<p>□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 표준 계산특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특례) 해운소득에 대해서는 선박톤수 및 운항 일수를 기준으로 과세표준 계산*</li> <li>* 선박표준이익 = <math>\Sigma(\text{개별선박의 순톤수} \times 1\text{톤당1운항일이익} \times \text{운항일수} \times \text{사용률})</math></li> <li>- 특례 적용시 연속한 5개 사업연도 동안의 무적용</li> <li>• (적용기한) '19.12.31.</li> </ul>	<p>□ 적용기한 연장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좌 등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'24.12.31.</li> </ul>

<개정이유> 해운산업 경쟁력 제고

11. 우수선화주 인증 포워더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(조특법 §104의30, 조특령 §104의27)

종 전	개 정
<p>&lt;신 설&gt;</p>	<p>□ 우수선화주 인증*을 받은 국제물류주선업자(포워더)에 대한 세액 공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해운법§47의2 우수 선화주인증</li> <li>• (대상) 우수 선화주 인증 국제물류주선업자 중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기업</li> <li>• (요건)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(등록자)에 지출한 운송비용이 전체 해상운송비용의 40% 이상일 것</li> <li>② 전체 해상운송비용 중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(등록자)에 지출한 비용의 비율이 직전과세연도보다 높을 것</li> </ul> </li> <li>• (세액공제)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운송비용*의 1%(직전연도 대비 증가분은 3%추가) 세액공제</li> <li>* 수출 수입을 위한 비용으로서 운송계약에 따라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된 금액</li> <li>- 공제한도 : 소득 법인세의 10% 범위</li> </ul>

<개정이유> 우수선화주 인증을 받은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외항정기화물운송업자에 지출한 비용에 대한 지원

<적용시기> '20.1.1.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

## 12. 영어조합법인의 법인세 비과세 범위 확대 (조특령 § 64①)

종 전	개 정
□ 영어조합법인 법인세 면제 소득의 한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1천200만원×조합원 수×(사업연도월수/12)</li> </ul>	□ 법인세 면제 소득 범위 확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어로어업소득의 경우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3천만원×조합원 수×(사업연도월수/12)</li> </ul> </li> <li>• 그 외 소득의 경우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1천200만원×조합원 수×(사업연도월수/12)</li> </ul> </li> </ul>

〈개정이유〉 영어조합법인의 어로어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범위 확대

〈적용시기〉 '20.1.1.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

## 13. 투자·상생협력촉진세제 기업소득계산시 차감항목 추가 (조특칙 §45의9)

종 전	개 정
□ 기업소득계산시 차감항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, 「상법」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이익준비금 등</li> <li>•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적립금(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으로 한정)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「은행법」 등 개별법령에 따른 이익준비금</li> <li>- 금융회사 또는 공제조합이 대손충당금 또는 대손준비금 등으로 의무적립하는 금액</li> <li>-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「보험업법」에 따라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과 보증준비금으로 의무적립하는 금액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〈추 가〉</p> </li> <li>• 공적자금의 상환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액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수협은행이 공적자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수협중앙회 신용사업특별회계에 배당하는 금액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〈추 가〉</p> </li> </ul>	□ 차감항목 추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좌 동)</li> <li>• 대상 추가               <div style="border-left: 1px solid black; border-right: 1px solid black; padding: 0 10px; margin: 10px 0;">                 (좌 동)               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라 지방공사가 감채적립금으로 의무적립하는 금액</li> </ul> </li> <li>• 대상 추가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좌 동)</li> <li>- 보증보험회사가 공적자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잉여금처분으로 배당하는 금액</li> </ul> </li> </ul>

〈개정이유〉 지방공사 및 보증보험회사의 채무상환 지원을 위해 투자·상생협력촉진세제의 기업소득 범위 합리적 조정

〈적용시기〉 규칙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

## 2 조세특례분야

### 【조세특례제한법·시행령·시행규칙】

#### 1. 중소기업 판단시 매출액 기준시점 명확화(조특칙 §2)

종 전	개 정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□ 중소기업 해당 여부 판단요건의 기준시점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자산총액 :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</li> <li>• 독립성 기준상 관계기업 해당 여부 :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준</li> <li>• 매출액 :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□ 매출액 요건의 기준시점 명확화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좌 동)</li> <li>• (좌 동)</li> <li>• 매출액 : 해당 과세연도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</li> </ul> </li> </ul>

〈개정이유〉 중소기업 판정시점 명확화

#### 2. 연구개발에서 제외되는 활동의 범위 규정(조특법 §2, 조특령 §1의2)

종 전	개 정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□ 연구개발에서 제외하는 활동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 개념(법 §9), 연구개발에서 제외되는 활동(영 §8)</li> <li>• 일반적인 관리·지원활동, 시장조사·판촉·일상적인 품질시험 활동 등</li> <li>• 이미 기획된 콘텐츠·소프트웨어 등을 제작하는 활동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□ 소프트웨어 분야 적용범위 명확화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 개념(법 §2), 연구개발에서 제외되는 활동(영 §1의2) 이관</li> <li>• (좌 동)</li> <li>• 이미 기획된 콘텐츠를 단순 제작하는 활동</li> <li>• 기존에 상품화 또는 서비스화된 소프트웨어 등을 복제하여 반복적으로 제작하는 활동</li> </ul> </li> </ul>

〈개정이유〉 소프트웨어 분야의 R&D 비용 세액공제 적용범위 명확화

### 3. 상생형 지역일자리 참여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확대 (조특법 §5④)

종 전	개 정
<p>□ 중소·중견기업 투자세액공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공제대상) 중소·중견기업의 일반 사업용 자산 등에 대한 투자금액</li> <li>• (공제율) 중소 3%, 중견 1~2%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고용 또는 산업 위기지역 지정기간 내 투자시 : 중소 10%, 중견 5%</li> </ul> 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〈추 가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적용기한) '21.12.31.</li> </ul>	<p>□ 상생형 지역일자리*에 참여하는 중소·중견기업 공제율 상향</p> <p>* 지역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지자체, 기업, 근로자 등 다양한 경제주체간 근로여건, 투자계획 등에 대한 합의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사업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좌 동)</p> <p>- 상생형 지역일자리에 참여하며 투자시 : 중소 10%, 중견 5%</p> <p>※ 상생형 지역일자리 관련 「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」 개정을 전제로 추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좌 동)</li> </ul>

〈개정이유〉 지역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지원

〈적용시기〉 상생형 지역일자리 선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'20.1.1.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

### 4.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확대 (조특법 §5④)

종 전	개 정
<p>□ 중소·중견기업 투자세액공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공제대상) 중소·중견기업의 일반 사업용 자산 등에 대한 투자금액</li> <li>• (공제율) 중소 3%, 중견 1~2%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고용 또는 산업 위기지역 지정기간 내 투자시 : 중소 10%, 중견 5%</li> </ul> </li> </ul>	<p>□ 규제자유특구*의 중소·중견기업 공제율 상향</p> <p>* 「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」에 따라 수도권 외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특례 등이 적용되는 구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좌 동)</li> <li>• (좌 동)</li> </ul>



<p>〈추 가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적용기한) '21.12.31.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규제자유특구에서 규제자유 특구사업자*가 투자시 : 중소기업 5%, 중견기업 3%</li> <li>** 「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」에 따라 규제자유특구에서 지역혁신성장사업 등을 하는 자</li> </ul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좌 등)</li> </ul>
--	--

〈개정이유〉 지역과 연계된 신산업·신기술 육성을 위해 규제 자유특구 내 기업의 투자촉진 유도  
 〈적용시기〉 규제자유특구 지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'20.1.1.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

### 5.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자산의 범위 명확화(조특령 §4②)

종 전	개 정
<p>□ 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사업용 자산의 범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건축물, 차량 및 운반구, 공구 등은 제외</li> </ul> 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〈단서 신설〉</p>	<p>□ 즉시상각 적용 자산은 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좌 등)</li> <li>•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,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즉시상각을 적용받은 자산은 제외</li> </ul>

〈개정이유〉 즉시상각과 투자세액공제를 모두 적용받지 않도록 하여 과세형평성 제고

### 6.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 확대(조특법 §6③, 조특령 §5)

종 전	개 정
<p>□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적용대상) 창업중소기업, 벤처기업 등</li> <li>• (감면율) 5년간 50~100%</li> <li>• (업종)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제조업</li> </ul> </li> </ul>	<p>□ 적용대상 서비스업 업종 확대</p> <div style="border-left: 1px solid black; border-right: 1px solid black; padding: 0 10px; margin: 10px 0;"> <p>(좌 등)</p> </div> <p>- (좌 등)</p>

<p>〈추 가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물류산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화물운송업</li> <li>• 화물터미널 운영업</li> <li>• 보관 및 창고업, 화물운송중개·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등</li> </ul> </li> </ul> <p>〈추 가〉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①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호에 따른 전자금융업,</li> <li>② 자본시장법 제9조 제27항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 중개업</li> <li>③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른 소액해외송금업</li> </ul> </li> <li>- 물류산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화물운송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→ 육상·수상·항공운송업</li> </ul> </li> <li>• 화물터미널 운영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→ 육상·수상·항공 운송 지원 서비스업</li> </ul> </li> <li>• (좌 등)</li> </ul> </li> <li>-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, 경영컨설팅업,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</li> </ul>
---	---

〈개정이유〉 과당경쟁 우려, 고소득·자산소득, 소비성 사행성 업종 등 부적합 업종을 제외한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 확대

〈적용시기〉 '20.1.1. 이후 창업하는 경우부터 적용

## 7. 위탁·공동 R&D 비용 세액공제 범위 확대(조특법 §9②)

종 전	개 정
<p>□ R&amp;D 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 범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과학기술 R&amp;D : 자체 R&amp;D 비용, 위탁·공동 R&amp;D 비용</li> <li>• 서비스 R&amp;D : 자체 R&amp;D 비용</li> </ul> <p>〈추 가〉</p>	<p>□ 서비스 R&amp;D에 대한 위탁·공동 R&amp;D 비용 인정 범위 확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좌 등)</li> </ul> <p>- 위탁·공동 R&amp;D 비용(과학기술과 결합된 서비스 R&amp;D에 한정)</p>

〈개정이유〉 위탁·공동 R&D 비용 세액공제 인정 확대를 통한 서비스 R&D 활성화

〈적용시기〉 '20.1.1. 이후 개시하는 과제연도 분부터 적용

## 8. R&D 비용 세액공제 배제 사유 및 시점 구체화(조특법 §10, 조특령 §9)

종 전	개 정
<p>〈신 설〉</p>	<p>□ R&amp;D 비용 세액공제 배제 사유 및 시점 구체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배제 사유)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 취소사유에 따라 구분하여 규정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거짓·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*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「기초연구법」 제14조의3제1항제1호, 「문화산업진흥기본법」 제17조의3제4항제1호</li> </ul> </li> <li>② 인정기준 및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*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「기초연구법」 제14조의3제1항제4호 및 제7호, 「문화산업진흥기본법」 제17조의3제4항제2호</li> </ul> </li> <li>③ 기업이 인정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등*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「기초연구법」 제14조의3제1항제2호, 제3호, 제5호, 제6호 및 제8호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li>• (배제 시점) 배제사유(①②③)에 따라 구분하여 규정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인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</li> <li>② 인정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</li> <li>③ 인정취소일</li> </ul> </li> </ul>

〈개정이유〉 R&D 비용 세액공제 배제 사유 및 시점을 납세자의 귀책정도에 따라 구체화  
 〈적용시기〉 '20.1.1.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분부터 적용

## 9. 인력개발비 적용범위 확대(조특령 별표6)

종 전	개 정
<p>□ 인력개발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위탁훈련비용,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, 중소기업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 비용 등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〈추 가〉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〈추 가〉</p>	<p>□ 인력개발비 적용범위 확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좌 동)</li> <li>•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과 계약을 통해 설치·운용되는 직업교육훈련과정·학과 운영비용</li> <li>•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의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 등</li> </ul>

〈개정이유〉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등에 대한 세액공제(조특법 §104의18) 종료에 따라 해당 비용에 대한 지원유지  
 〈적용시기〉 '20.1.1.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

## 10. 공동·위탁 R&D기관 범위 명확화(조특령 별표6)

종 전	개 정
<p>□ 공동·위탁 R&amp;D 수행기관의 범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대학, 전문대학, 국공립연구기관, 정부출연연구기관, 국내외 비영리법인(부설 연구기관 포함) 등</li> <li>•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및 전담부서등</li> <li>• 연구개발서비스업*을 영위하는 기업 *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</li> </ul>	<p>□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및 전담부서 등의 의미 명확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좌 등)</li> <li>• 관계 법령등에 따라 세분화하여 규정(①, ②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기업의 연구기관: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 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기업이 설립한 국내외 연구기관</li> <li>② 국내 기업의 전담부서 등 또는 국외 기업에 부설된 연구기관</li> </ul> </li> <li>•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영리 목적으로 연구·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국외소재 기업</li> </ul>

<개정이유>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및 전담부서 등의 의미 명확화

## 11. 신성장·원천기술 대상 확대(조특령 별표7)

종 전	개 정
<p>□ 신성장·원천기술 대상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11대 분야 173개 기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반도체, 미래차, 바이오, 융복합 소재 관련 기술 등</li> </ul> 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신 설)</p>	<p>□ 신성장·원천기술 대상 확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12대 분야 223개 기술로 확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기존 11대 분야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30개 기술 신설, 14개 기술 적용범위 확대 * 예) 시스템반도체 설계·제조기술, 바이오 플라스틱 제조기술, 운전자생체데이터 분석기술, 6G 기술 등</li> </ul> </li> <li>② 첨단소재·부품·장비 분야 신설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20개 기술 신설*</li> <li>* 예) 고순도 산화알루미늄 분말 제조기술, 고압 컨트롤 밸브 제조기술, 첨단 머시닝센터 제조기술 등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/ul>

<개정이유>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신성장·원천기술 범위 확대

<적용시기> 2020.2.11.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

## 12. 신성장 R&D 위탁기관 범위 명확화 및 대상 확대 (조특칙 §7)

종 전	개 정
<p>□ 신성장 R&amp;D비용 세액공제 대상인 위탁기관의 범위</p> <p>    【① 임상1·2·3상 시험에 한하여 국외 위탁이 가능한 기관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비영리법인(부설 연구기관 포함)</li> <li>•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및 전담부서등</li> </ul> <p>• 연구개발서비스업*을 영위 하는 기업</p> <p>    * 「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」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</p> <p>    【② 모든 신성장 R&amp;D에 대해 국외위탁이 가능한 기관】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〈추 가〉</p>	<p>□ 위탁기관 범위 명확화 및 대상 확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좌 동)</li> <li>• 관계 법령등에 따라 세분화하여 규정<b>①, ②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기업의 연구기관: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기업이 설립한 국내외 연구기관</li> <li>② 국내 기업의 전담부서 등 또는 국외 기업에 부설된 연구기관</li> </ul> </li> <li>•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영리 목적으로 연구·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국외소재 기업</li> <li>• 내국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% 이상을 직접 보유하거나 80%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외국법인(부설된 연구기관 포함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간접소유비율 계산은 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§2②준용</li> </ul> </li> </ul>

〈개정이유〉 혁신성장 지원 및 위탁기관 범위 명확화

〈적용시기〉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

13. 지역특구 세제지원 감면한도 계산시 ‘투자누계액’의 대상이 되는 사업용 자산 등의 범위 명확화(조특칙 §8의3)

종 전	개 정
<p>□ 지역특구 감면제도의 감면한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한도) 투자누계액 50% + 상시근로자 수 × 1,500만원* * 청년 및 서비스업은 2,000만원</li> <li>• (투자누계액 대상이 되는 사업용 자산의 범위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 자산</li> <li>② 건설 중인 자산</li> <li>③ 무형고정자산</li> </ul> </li> </ul>	<p>□ 투자누계액 대상이 되는 사업용 자산의 범위 명확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좌 등)</li> <li>• ①과 ②의 경우 해당 특구 내 소재·사용하는 것으로 한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해당 특구 내 소재하거나 해당 특구 내에서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</li> <li>② 해당 특구 내 소재하거나 해당 특구 내에서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 중인 자산</li> <li>③ (좌 등)</li> </ul> </li> </ul>

〈개정이유〉 지역특구 활성화를 위한 제도 취지를 감안하여 투자누계액 대상 명확화

14.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를 한시 상향 등(조특법 § 25, 조특령 § 22의5, 조특칙 별표2)

종 전	개 정																						
<p>□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공제율) <table border="1" style="margin-left: 20px;"> <thead> <tr> <th>대기업</th> <th>중견기업</th> <th>중소기업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%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3%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7%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/li> <li>• (대상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공정을 개선하거나 시설의 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해 투자하는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</li> </ul> </li> </ul>	대기업	중견기업	중소기업	1%	3%	7%	<p>□ 공제율 한시 상향, 대상 명확화 및 적용기한 연장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공제율 한시 상향) <table border="1" style="margin-left: 20px;"> <thead> <tr> <th>기간</th> <th>대</th> <th>중견</th> <th>중소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① '20년 투자분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%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5%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0%</td> </tr> <tr> <td>② '21년 투자분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%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5%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0%</td> </tr> <tr> <td>③ ②이후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%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3%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7%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/li> <li>• (대상 명확화 및 추가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공정을 개선하거나 시설의 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해 투자하는 시설(데이터에 기반하여 생산·제조과정을 관리하거나 개선하는 지능형 공장시설*을 포함)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**</li> </ul> </li> </ul>	기간	대	중견	중소	① '20년 투자분	2%	5%	10%	② '21년 투자분	1%	5%	10%	③ ②이후	1%	3%	7%
대기업	중견기업	중소기업																					
1%	3%	7%																					
기간	대	중견	중소																				
① '20년 투자분	2%	5%	10%																				
② '21년 투자분	1%	5%	10%																				
③ ②이후	1%	3%	7%																				
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첨단기술을 이용하거나 응용하여 제작된 시설</li> </ul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적용기한) '19.12.31.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예) 클라우드 서비스, 공장원격관리시스템(SCADA) 등</li> <li>** 물류자동화설비등첨단물류시설 추가</li> </ul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'21.12.31.</li> </ul>
---	--

〈개정이유〉 투자유인 증대를 위한 투자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및 적용대상 범위 명확화·확대  
 〈적용시기〉 (대상 확대) '20.2.11.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 
 (그 외) '20.1.1.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

### 15. 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정비 및 적용기한 연장

(조특법 § 25, 조특령 § 22의5, 조특칙 § 13의5, 별표 5의2~5의5)

종 전	개 정
<p>□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대상)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소방시설</li> <li>- 산업재해예방시설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가스공급시설·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시설 포함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li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〈추 가〉</li> <li>- 「비상대비지원법」에 따른 보강시설 및 내진보강시설</li> <li>- 위해요소방지시설</li> <li>- 광산보안시설</li> <li>- 기술유출 방지시설</li> <li>- 해외자원 개발시설</li> <li>• (공제율) 대기업 1%, 중견기업 5%, 중소기업 10%</li> <li>• (적용기한) '19.12.31.</li> </ul>	<p>□ 대상 정비 및 적용기한 연장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대상)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좌 등)</li> <li>• (좌 등)</li> <li>• 열수송관·송유관, LPG·위험물시설의 안전시설</li> </ul> </li> <li>- (좌 등)</li> <li>- (좌 등)</li> <li>- '광산안전시설'로 명칭 변경</li> <li>- 〈삭 제〉</li> <li>- 〈삭 제〉</li> <li>• (좌 등)</li> <li>• '21.12.31.</li> </ul>

〈개정이유〉 폭발·유출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설비를 추가하고, 국민 안전과 직접적 관련이 적은 시설을 정비

〈적용시기〉 (대상 추가) '20.2.11.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 
 (대상 삭제) '20.1.1.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

## 16.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

(조특법 § 25의4, 조특칙 § 13의7, 별표8의10)

종 전	개 정
<p>□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대상)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에 따라 의약품 등의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(토지 제외)</li> </ul> </li> <li>• (공제율) 대기업 1%, 중견기업 3%, 중소기업 6%</li> <li>• (적용기한) '19.12.31.</li> </ul>	<p>□ 대상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대상)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물리적·화학적 방법을 이용한 고품질 의약품 제조 설비</li> <li>- 의약품 제조 관련 세척 및 포장을 위한 설비</li> </ul> </li> <li>• (좌 동)</li> <li>• '21.12.31.</li> </ul>

〈개정이유〉 첨단 제약산업의 지속적 지원을 위해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세액공제 대상 조정  
 〈적용시기〉 (대상 조정) 규칙 시행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

## 17.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 (조특칙 별표 8의8)

종 전	개 정
<p>□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시설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102개 시설 열거 (추 가)</li> </ul>	<p>□ 신성장기술 확대를 반영하여 공제대상 시설 추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141개 시설로 확대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첨단 메모리 반도체 설계·제조 기술 등 관련 시설 39개</li> </ul> </li> </ul>

〈개정이유〉 신성장 산업 및 혁신성장 지원  
 〈적용시기〉 규칙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



## 18.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적용대상 상향입법 및 오락프로그램 추가

(조특법 §25조의6, 조특령 §22의10)

종 전	개 정
<p>□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 공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대상) 영화, TV에 방영된 방송프로그램*</li> </ul> <p>* (시행규칙 §13의9) 드라마, 애니메이션, 한국 소재 다큐멘터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공제율) 대기업 3%, 중견기업 7%, 중소기업 10%</li> <li>• (적용기한) '22.12.31.</li> </ul>	<p>□ 적용대상으로 오락프로그램 추가 등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대상) 영화, TV에 방영된 방송프로그램 중 드라마, 애니메이션, 다큐멘터리 및 오락프로그램*</li> </ul> <p>* 「방송법시행령」에 따른 교양에 관한 프로그램 중 다큐멘터리, 오락에 관한 프로그램 및 「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애니메이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좌 동)</li> <li>• (좌 동)</li> </ul>

〈개정이유〉 영상콘텐츠 산업 지원 및 한류 확산 촉진

〈적용시기〉 '20.1.1. 이후 발생한 영상콘텐츠의 제작비용 지출분부터 적용

## 19. 초연결 네트워크 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 (조특령 §22의11)

종 전	개 정
<p>□ 초연결 네트워크 투자세액공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적용범위)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</li> <li>• (공제대상) 5G 기술*이 적용된 기지국 장비 매입가액</li> </ul> <p>* 조특령 별표7(5G 이동통신 기지국 장비 기술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공제율) 2% + 최대 1%</li> <li>• (적용기한) 2020.12.31.</li> </ul>	<p>□ 초연결 네트워크 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좌 동)</li> <li>• 공사비 등 부대비용도 포함*</li> </ul> <p>* 다른 투자세액공제제도와 동일한 방식으로 투자금액 계산(조특령 §4③ 준용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좌 동)</li> <li>• (좌 동)</li> </ul>

〈개정이유〉 5G 시설투자에 대한 조기투자 인센티브 강화

〈적용시기〉 '20.1.1.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

20.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기업의 세액공제 요건 완화(조특법 § 29의3①, 조특령 § 26의3)

종 전	개 정
<p>□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·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경력단절여성 요건)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</li> <li>- 임신·출산·육아 사유로 퇴직</li> </ul> </li> <li>- 퇴직 후 3~10년 이내 동일 기업에 재취직</li> <li>• (공제액) 재고용 후 2년간 인건비의 30%(중견기업 15%)</li> <li>• (적용기한) '20.12.31.</li> </ul>	<p>□ 경력단절여성 요건 완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좌 동)</li> <li>- 결혼*·임신·출산·육아·자녀교육** 사유로 퇴직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퇴직한 날로부터 1년 이내 결혼</li> <li>** 초·중·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경우</li> </ul> </li> <li>- 퇴직 후 3~15년 이내 동종 업종*에 재취직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</li> </ul> </li> <li>• (좌 동)</li> <li>• (좌 동)</li> </ul>

〈개정이유〉 경력단절여성 요건 완화를 통해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지원 제도의 실효성 제고  
 〈적용시기〉 '20.1.1. 이후 재고용하는 분부터 적용

21. 청년고용증대세제 추정세액 계산시 청년 간주규정 보완(조특령 §26의5)

종 전	개 정
<p>□ 청년고용증대세제* 사후관리위반**에 따른 추정세액 계산방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청년(29세 이하인 자) 정규직근로자 수 증가 시 300~1,000만원 세액공제</li> <li>** 2년 이내에 청년 정규직 근로자 등 감소시 공제받은 세액 추정</li> <li>• (추징세액) ①~③ 중 가장 큰 인원×300~1,000만원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청년 정규직 근로자 감소인원(공제받은 연도대비)</li> <li>② 전체 정규직 근로자 감소인원(공제받은 연도대비)</li> <li>③ 상시근로자 감소인원(공제받은 연도대비)</li> </ul> </li> </ul>	<p>□ 추정세액 계산시 '청년'으로 간주되는 기준 보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좌 동)</li> </ul>

- |   |   |
|---|-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추징세액 계산시 청년의 기준)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청년인 경우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으로 간주</li> 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인 경우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으로 간주</li> </ul> |
|---|---|

〈개정이유〉 추징세액 계산시 기간 경과에 따른 청년 근로자 수의 자연감소를 배제하기 위해 규정 보완

〈적용시기〉 '20.2.11.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

## 22. 중소기업에 대한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증가율 조정(조특칙 §14의2)

종 전	개 정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□ 중소기업에 대한 근로소득 증대세제 적용 기준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당해연도 평균임금 증가율 &gt; 직전 3년 증가율의 평균</li> <li>• 당해연도 평균임금 증가율 &gt; 3.6%*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전체 중소기업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을 고려하여 정한 비율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□ 임금증가율 기준 변경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좌 동)</li> <li>• 3.6% → 3.8%</li> </ul> </li> </ul>

〈개정이유〉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을 감안하여 기준 조정

〈적용시기〉 '20.1.1.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

## 23. 고용증대세제 공제액 명확화 및 사후관리 기준 보완 등(조특법 §29의7①·②, 조특령 §26의7)

종 전	개 정																		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□ 고용증대세제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공제액) 전년보다 고용증가시 1인당 연간 일정금액 공제 (단위: 만원)</li> </ul> <table border="1" style="margin-left: 20px;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 <th colspan="2">중소기업</th> <th>중견기업</th> <th>대기업</th> </tr> <tr> <td></td> <th>수도권</th> <th>지방</th> <td></td> <td></td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청년* 상시</td> <td>1,100</td> <td>1,200</td> <td>800</td> <td>400</td> </tr> <tr> <td>청년 외 상시</td> <td>700</td> <td>770</td> <td>450</td> <td>-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</li> </ul> </li> <li>• (공제기간) 대기업 2년 중소·중견 3년</li> </ul>	구 분	중소기업		중견기업	대기업		수도권	지방			청년* 상시	1,100	1,200	800	400	청년 외 상시	700	770	450	-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□ 세액공제 금액 명확화 및 사후관리 기준 변경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각 공제금액(청년/청년 외)은 전체 상시근로자 수 증가분을 한도로 함을 명시</li> </ul> </li> <li>• (좌 동)</li> </ul>
구 분	중소기업		중견기업	대기업																	
	수도권	지방																			
청년* 상시	1,100	1,200	800	400																	
청년 외 상시	700	770	450	-																	

- (사후관리) 공제받은 과세연도부터 2년간 공제받은 직전 과세연도에 비해 청년 및 전체 상시근로자 수 감소시 추가공제\* 미적용 및 공제받은 세액 추징
  - \* 고용이 증가한 과세연도 다음 해 및 다다음 해 공제분
- (추징세액)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, 상시근로자 감소인원×공제액
  - 직전연도에 이미 추징세액이 있었던 경우 해당금액 차감
    - ※ 청년고용증대세제 추징세액규정 준용
- (추징세액 계산시 청년의 기준)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청년인 경우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으로 간주
- (적용기한) '21.12.31.
- (상시근로자 수 감소 기준연도 변경) 공제받은 직전 과세연도
  - 공제받은 과세연도
- 추징세액 계산방법 보완
  - ① 1년 이내 감소하는 경우
    - i) 상시근로자 감소시
      - 청년등 감소인원이 상시근로자 감소인원 초과시 : 그 초과인원×청년등 및 그 외의 공제액 차이+상시근로자 감소인원×청년등공제액
      - 그 밖의 경우 : 청년등/그 외 상시근로자 감소인원×해당 공제액
    - ii) 상시근로자 유지·증가시\* : 그 초과인원×청년등 및 그 외의 공제액 차이
      - \* 청년등 감소인원 ≥ 상시근로자 증가인원
  - ② 1~2년 기간 중 감소하는 경우
    - ①과 같은 방법으로 추징하되, 2년간 공제받은 금액 추징
    - ①에 따른 既추징세액은 차감
-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인 경우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으로 간주
- (좌 동)

〈개정이유〉 고용증대세제의 합리적 운용

〈적용시기〉 (사후관리) '20.1.1.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

(추징세액) '20.2.11.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

#### 24. 정규직 전환 기업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(조특법 § 30의2①)

종 전	개 정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□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시 세액공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요건) '18.11.30.*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'19.1.1.~12.31.까지 정규직 전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'19년 이전에는 전년도 6.30. 기준</li> </ul> </li> <li>• (공제액) 전환인원 × 1,000만원 (중견기업은 700만원)</li> <li>• (적용기한) '19.12.31.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□ 적용요건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요건) '19.6.30.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'20.1.1.~12.31.까지 정규직 전환</li> <li>• (좌 등)</li> <li>• '20.12.31.</li> </ul> </li> </ul>

〈개정이유〉 일자리의 질 향상을 위해 최소 6개월 이상 비정규직으로 고용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지속 지원

#### 25. 사회보험 신규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 1년 연장(조특법 §30의4)

종 전	개 정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□ 사회보험 신규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대상) 상시근로자 10인 미만+과세표준 5억원 이하 중소기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액의 100%~120%인 근로자</li> </ul> </li> <li>• (요건) '19.1.1. 현재 고용 중인 근로자가 사회보험 신규가입</li> <li>• (공제액) 신규가입인원×사회보험료×50%(2년간)</li> <li>• (적용기한) '19.12.31.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□ 적용기한 1년 연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'20.12.31.</li> </ul> </li> </ul>

〈개정이유〉 영세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

26.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계산방법 보완(조특령 §27의4)

종 전	개 정
<p>□ 중소기업의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요건)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 증가</li> <li>• (공제액)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×사회보험료×50~100%</li> <li>• (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)</li> </ul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: 5px 0;"> <math display="block">\frac{\text{해당 기간의 매월 말 현재 근로자 수의 합}}{\text{해당 기간의 개월 수}}</math> 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사회보험료 계산방법)</li> </ul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: 5px 0;"> <math display="block">\frac{\text{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총 급여액}}{\text{상시근로자 수}} \times \text{사회보험료율}</math> </div>	<p>□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명확화</p> <div style="border-left: 1px solid black; border-right: 1px solid black; padding: 0 10px; margin: 10px 0;">(좌 동)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해당 기간 → 해당 과세연도</li> <li>• 국가 등이 지급한 보조금 제외</li> </ul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: 5px 0;"> <math display="block">\frac{\text{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근로자 수의 합}}{\text{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}}</math> </div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: 5px 0;"> <math display="block">\frac{\text{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총 급여액}}{\text{상시근로자 수}} \times \text{사회보험료율}</math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 국가 등이 지급한 보조금 및 감면액</p> </div>

〈개정이유〉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을 명확히 하고, 재정지출과의 중복지원을 배제하기 위해 공제되는 사회보험료금액에서 국가보조금 등은 제외  
 〈적용시기〉 (사회보험료 계산방법) '20.2.11.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

27.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 명확화(조특령 §60의2)

종 전	개 정
(신 설)	<p>□ 법인의 수도권 밖 본사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액 계산시 상시근무인원 범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, 상시근무하는 사용자 및 임원을 포함하되,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기간제·단시간 근로자, 서류상 근로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 제외</li> </ul> </li> </ul>

〈개정이유〉 상시근무인원의 범위 명확화

28.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 지방이전 과세특례 폐지(조특법 §85의2③)

종 전	개 정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□ 행정중심복합도시·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대상) 행정중심복합도시·혁신도시 내의 공장 시설을 지방*으로 이전하는 기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수도권과밀억제권역, 광역시 등 제외</li> </ul> </li> <li>• (지원내용) 소득세·법인세 4년간 50% 감면</li> </ul> </li> </ul>	<폐 지>

<개정이유> 행정중심복합도시·혁신도시 준공(17년) 등에 따른 정책목적 달성  
 <적용시기> '20.1.1. 이전에 지방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종전규정 적용

29. 사회적기업등 세액감면 제도 고용친화적 재설계(조특법 § 85의6①·②)

종 전	개 정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□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대상)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</li> <li>• (지원내용) 소득세·법인세 3년간 100%, 2년간 50% 감면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□ 한도신설 및 적용기한 연장</li> </ul> <div style="margin-left: 20px;">                 (좌 동)             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감면한도) 1억원+취약계층* 상시근로자 수 ×2,000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사회적기업: 저소득층, 고령자, 장애인등 장애인 표준사업장 : 장애인</li> </ul> </li> <li>• 상시근로자의 범위*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현행 고용중대세제 상시근로자의 범위와 동일</li> <li>-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근로자</li> </ul> </li> <li>• 다만,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</li> <li>•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</li> <li>• 임원 및 최대주주와 그의 직계존비속 등</li> <li>•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국민연금 등의 보험료 납부가 확인되지 않은 자</li> </ul> </li> </ul>
<신 설>	
<신 설>	
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적용기한) '19.12.31.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* * 현행 고용증대세제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과 동일</li> <li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—</li> <li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해당 과세연도의 매월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</u>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</li> <li>• '22.12.31</li> </ul>
---	---

〈개정이유〉 사회적기업등의 취약계층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취약계층 고용과 연계된 감면한도 신설

〈적용시기〉 '20.1.1.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

### 30.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율 축소 등 (조특법 § 96, 조특령 § 96)

① 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율 축소(조특법 § 96)

종 전	개 정
□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 감면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임대기간에 따라 4년/8년 이상 30%/75%</li> </ul>	□ 임대주택 2호 이상 임대사업자에 한해 세액감면율 축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임대주택 2호 이상 임대 시 '21년부터 20% / 50%</li> </ul>

〈개정이유〉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합리화

〈시행시기〉 '21.1.1. 이후 임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

② 임대개시일 명확화(조특령 § 96)

종 전	개 정
〈신 설〉	□ 임대개시일 명확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임대를 개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, 그 요건을 모두 충족한 날 임대를 개시하는 것으로 봄    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「소득세법」 또는 「법인세법」에 따른 사업자 등록</li> <li>2.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또는 「공공주택 특별법」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지정</li> </ol> </li> </ul>

〈개정이유〉 등록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 명확화



③ 임대주택 유형 및 임대주택 호수 변경의 경우 감면금액 산출방법 명확화(조특령 § 96)

종 전	개 정
(신 설)	<p>□ 감면금액 산출 방법</p> <p>① 임대주택 호수가 변경되는 경우, 과세연도 종료일 당시 임대주택 호수를 기준으로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</p> <p>②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으로 변경하는 경우, 변경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을 적용*</p> <p>* 임대시점은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기산</p>

〈개정이유〉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액 산정방법 명확화

④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 합리화(조특령 § 96)

종 전	개 정
<p>□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내국인이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국민주택규모 이하,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</li> <li>- 임대료(임대보증금) 연 증가율이 5% 이하 일 것</li> </ul> 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후단 추가)</p>	<p>□ 임대료(임대보증금) 증액제한 요건 합리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좌 동)</li> <li>- (좌 동)</li> <li>- 임대료(임대보증금) 증가율이 5% 이하일 것</li> <li>- 임대계약 체결 또는 임대료 증액 후 1년이 내 재증액 불가</li> <li>- 임대료 증가율 계산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간 전환비율에 대해 「민간임대주택법」등을 준용*하도록 규정</li> <li>* 「민간임대주택법」 제44조④, 「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」 제44조③</li> </ul>

〈개정이유〉 개정된 「민간임대주택법」과의 통일성 제고

〈적용시기〉 영 시행일 이후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

### 31. 위기지역 창업기업 세제지원 확대 (조특법 § 99의9②)

종 전	개 정
<p>□ 고용 또는 산업위기지역* 내 창업기업 세액 감면</p> <p>* 고용위기지역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(현재 9개): 군산, 거제, 통영, 고성, 창원(진해구), 울산(동구), 목포, 영암, 해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대상) 위기지역 지정기간 내 창업(사업장 신설 포함) 기업</li> <li>• (지원내용) 소득세·법인세 5년간 100% 감면</li> <li>• (최저한세) 적용 제외</li> <li>• (적용기한) '21.12.31.</li> </ul>	<p>□ 감면기간 확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좌 동)</li> <li>• 5년간 100%, 2년간 50% 감면</li> <li>• 100% 감면기간은 적용 제외, 50% 감면기간은 적용</li> <li>• (좌 동)</li> </ul>

〈개정이유〉 창업활성화를 통해 어려움을 겪는 위기지역의 경제회복 지원 강화

〈적용시기〉 '20.1.1.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

### 32. 전자신고 세액공제의 세무대리인 공제한도 상향입법 (조특법 §104의8)

종 전	개 정									
<p>□ 전자신고 세액공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공제대상 및 금액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소득세·법인세 : 건당 2만원</li> <li>- 부가가치세 : 건당 1만원</li> </ul> </li> <li>• 세무대리인 공제 한도*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시행령 §104의5⑤</li> </ul> <table border="1" style="margin-left: 20px;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 <th>'19~'20년</th> <th>'21년이후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세무대리인</td> <td>300만원</td> <td>200만원</td> </tr> <tr> <td>세무대리법인</td> <td>750만원</td> <td>500만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/li> </ul>	구 분	'19~'20년	'21년이후	세무대리인	300만원	200만원	세무대리법인	750만원	500만원	<p>□ 세무대리인 공제한도 상향 입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좌 동)</li> <li>• (세무대리인 공제 한도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세무사 등 300만원,</li> <li>세무법인 등 750만원</li> </ul> </li> </ul>
구 분	'19~'20년	'21년이후								
세무대리인	300만원	200만원								
세무대리법인	750만원	500만원								

〈개정이유〉 특례 주요내용 법률에 직접 규정

33. 맞춤형 교육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 (조특법 §104의18)

종 전	개 정
<p>□ 기업이 지원하는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제지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대학교·마이스터고 등의 직업교육훈련과정 맞춤형 교육비용에 대한 R&amp;D비용 세액공제</li> <li>• 마이스터고 등의 현장훈련수당 등에 대한 R&amp;D비용 세액공제</li> <li>• 대학교·마이스터고 등에 기부하는 연구시험용시설 등에 대한 R&amp;D설비투자 세액공제*</li> </ul> <p>* 대 중견 중소기업: 1 3 7%</p> <p>• (적용기한) '19.12.31</p>	<p>□ 적용기한 종료</p>

〈개정이유〉 제도의 실효성이 미미\*한 점을 감안

\* 최근 감면실적 : ('15) 0.36억원 ('16) 1.58억원 ('17) 1.24억원

34.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적용대상 축소 (조특법 § 104의24)

종 전	개 정
<p>□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요건) 석유제품을 한국거래소 전자결제망을 통해 거래시</li> <li>• (공제금액)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0.1%, 수요자는 0.2%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단,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·법인세의 10% 한도</li> </ul> </li> </ul> <p>• (적용기한) '19.12.31.</p>	<p>□ 적용기한 연장 및 적용대상 축소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좌 동)</li> <li>• 수요자에 한해 공급가액의 0.2%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단,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·법인세의 10% 한도</li> </ul> </li> </ul> <p>• '22.12.31.</p>

〈개정이유〉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

〈적용시기〉 '20.1.1.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

35.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(조특법 § 121의22)

종 전	개 정
<p>□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대상) 첨단의료복합단지(대구, 오송) 내 입주기업</li> <li>• (지원내용) 소득세·법인세 3년간 100%, 2년간 50% 감면</li> <li>• (적용기한) '19.12.31.</li> </ul>	<p>□ 적용기한 연장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] (좌 동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'21.12.31.</li> </ul>

〈개정이유〉 지역 일자리 창출 및 투자활성화 등을 통한 균형발전 지속 지원

〈적용시기〉 '20.1.1.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

36.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신설(조특법 § 121의22, 조특령 § 116의27)

종 전	개 정
<p>〈신 설〉</p>	<p>□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대상)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입주기업</li> <li>• (지원내용) 소득세·법인세 3년간 100%, 2년간 50% 감면</li> <li>• 감면대상사업의 범위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「식품산업진흥법」에 따른 식품산업* 관련 사업</li> <li>* 식품을 생산, 가공, 제조, 조리, 포장, 보관,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</li> </ul> </li> <li>• (감면한도) 투자누계액의 50% + 상시근로자 수 × 1,500만원*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청년 및 서비스업 상시근로자는 2,000만원</li> </ul> </li> <li>• (적용기한) '21.12.31</li> </ul>

〈개정이유〉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

〈적용시기〉 '20.1.1.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

### 37. 금 현물시장 이용금액 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(조특법 §126의7)

종 전	개 정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□ 금 현물시장 이용금액 소득세 법인세 세액공제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요건) 금지금을 한국거래소 전자결제망을 통해 거래</li> <li>• (공제금액) ①과 ② 중 선택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산출세액×(전년대비 금 현물시장 이용금액 증가액/매출액)</li> <li>② 산출세액×(금현물시장이용금액의5%/매출액)</li> </ul> </li> <li>• (적용기한) '19.12.31.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□ 적용기한 종료</li> </ul>

〈개정이유〉 제도의 실효성이 미미\*한 점을 감안

\* 최근 감면실적 : ('15) 0.73억원 ('16) 0.23억원 ('17) 0.07억원

### 38. 지역특구에 대한 최저한세 정비(조특법 §132①)

종 전	개 정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□ 3년 100%, 2년 50% 감면 지역특구에 대한 최저한세 적용 현황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최저한세 적용 제외)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세액감면</li> <li>- 제주투자진흥지구·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세액감면</li> <li>-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창업기업 세액감면</li> <li>-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입주기업 세액감면</li> <li>-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세액감면</li> </ul> </li> <li>• (최저한세 적용)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연구개발특구 입주 첨단기술기업 세액감면</li> <li>-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세액감면</li> <li>※ 감면율에 관계없이 지역특구 제도별로 최저한세 적용 상이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□ 지역특구에 대한 최저한세 적용 정비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지역특구에 대해 동일원칙 적용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최저한세 적용 제외)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100% 감면기간</li> </ul> </li> <li>- (최저한세 적용)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그 외(50%) 감면기간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/ul>

〈개정이유〉 지역특구 제도 간 일관성을 확보하고 최저한세 및 100% 감면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용

〈적용시기〉 '20.1.1.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

### 39.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대상 및 면제요건 상향입법(조특법 §142)

종 전	개 정
<p>□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평가대상)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* 이상인 조세특례의 신규 도입 * 300억원(조특령 §135⑥)</li> <li>• (면제요건) 경제·사회적 상황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* 제외 * 예비타당성평가면제요건(조특령§135⑦)</li> </ul>	<p>□ 예비타당성평가 평가대상 및 면제요건을 법률에 상향입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평가대상) 연간 300억원 이상인 조세특례의 신규 도입</li> <li>• (면제요건) 법률에 상향입법하되, 경제·사회적 대응을 위한 경우에는 국무회의 심의요건 추가  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경제·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하는 경우로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</li> <li>②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·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</li> <li>③ 국제대회나 국가행사 등으로 시급히 도입할 필요가 있는 사항</li> <li>④ 심층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기존 조세특례를 개선하려는 경우</li> </ol> </li> </ul>

〈개정이유〉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제도의 실효성 제고  
 〈적용시기〉 '20.1.1.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

### 40. 조세특례 의무심층평가 면제요건 강화(조특령 §135)

종 전	개 정
<p>□ 조세특례 의무심층평가* 면제요건</p> <p>* 당해 연도에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사항으로서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특례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를 국회에 제출(조특법§142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지원대상의 소멸</li> <li>② 남북교류협력 또는 국가 간 협약·조약에 따른 경우</li> <li>③ 최근 3년 이내에 심층평가를 거친 경우</li> </ol>	<p>□ 면제요건 강화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좌 동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최근 2년 이내에 심층평가를 거친 경우</li> </ul>

〈개정이유〉 조세특례 심층평가의 내실화를 위하여 의무심층평가의 면제가 가능한 기간을 축소(3년 → 2년)

〈적용시기〉 '20.2.11.이 속하는 연도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실시하는 조세특례에 대한 평가분부터 적용

41. 신성장·원천기술 R&D 비용 세액공제 이월기간 확대 (조특법 § 144①)

종 전	개 정
<p>□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대상)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가 적용되어 공제받지 못한 공제세액</li> <li>• (이월공제기간) 5년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창업초기 중소기업(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)의 경우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: 7년</li> <li>• 연구·인력개발비세액공제 : 10년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〈추 가〉</p>	<p>□ 신성장동력·원천기술 R&amp;D비용 이월공제기간 연장</p> <div style="border-left: 1px solid black; border-right: 1px solid black; border-bottom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: 10px 0;">(좌 동)</div> <p>- 신성장동력·원천기술 R&amp;D비용 세액공제 : 10년</p>

〈개정이유〉 수익창출까지 장기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·고비용 신기술에 대한 R&D 지원

〈적용시기〉 '20.1.1. 이후 발생하는 비용 분부터 적용

### 3 2020년 귀속 법인세분야 주요 개정(안)

#### (1)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: 투자세액공제제도 전면 개편

(조특법 §24 신설 및 §5·25·25의4·25의5·25의7 폐지)

현 행	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□ 기업투자 관련 세액공제 제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<b>중소기업등 투자세액공제(§5)</b></li> </ul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구 분</th> <th colspan="3">중소기업</th> <th colspan="3">중견기업</th> </tr> <tr> <th>위기 지역</th> <th>신규 상장</th> <th>일반</th> <th>위기 지역</th> <th>신규 상장</th> <th>일반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공제율</td> <td>10%</td> <td>4%</td> <td>3%</td> <td>5%</td> <td>4%</td> <td>2% (수도권 1%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<b>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(§25)</b></li> </ul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 <th>중소 기업</th> <th>중견 기업</th> <th>대기업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① 연구시험용 및 직업 훈련용 시설</td> <td>7%</td> <td>3%</td> <td>1%</td> </tr> <tr> <td>② 에너지절약시설</td> <td>7%</td> <td>3%</td> <td>1%</td> </tr> <tr> <td>③ 환경보전시설</td> <td>10%</td> <td>5%</td> <td>3%</td> </tr> <tr> <td>④ 근로자복지증진시설</td> <td>10%</td> <td>5%</td> <td>3%</td> </tr> <tr> <td>⑤ 안전시설</td> <td>10%</td> <td>5%</td> <td>1%</td> </tr> <tr> <td>⑥ 생산성향상시설*</td> <td>7% (10%)</td> <td>3% (5%)</td> <td>1% (2%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* 대기업 '20년, 중소·중견기업 21년까지 공제율 한시 상향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⑦ <b>의약품 품질관리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 (§25의4)</b></li> </ul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 <th>중소기업</th> <th>중견기업</th> <th>대기업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공제율</td> <td>6%</td> <td>3%</td> <td>1%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⑧ <b>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세액공제 (§25의5)</b></li> </ul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 <th>중소기업</th> <th>중견기업</th> <th>대기업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공제율</td> <td>10%</td> <td>7%</td> <td>5%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구 분	중소기업			중견기업			위기 지역	신규 상장	일반	위기 지역	신규 상장	일반	공제율	10%	4%	3%	5%	4%	2% (수도권 1%)	구 분	중소 기업	중견 기업	대기업	① 연구시험용 및 직업 훈련용 시설	7%	3%	1%	② 에너지절약시설	7%	3%	1%	③ 환경보전시설	10%	5%	3%	④ 근로자복지증진시설	10%	5%	3%	⑤ 안전시설	10%	5%	1%	⑥ 생산성향상시설*	7% (10%)	3% (5%)	1% (2%)	구 분	중소기업	중견기업	대기업	공제율	6%	3%	1%	구 분	중소기업	중견기업	대기업	공제율	10%	7%	5%	<p>□ “통합투자세액공제”로 통합·단순화 (§24 신설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<b>(적용대상) 모든 개인사업자·법인(소비성 서비사업, 부동산임대업 등* 일부 제외)</b> * 구체적 업종은 시행령에서 규정</li> <li>• <b>(공제대상)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을 대상으로 하되, 일부 자산 제외</b> (현행: 포지티브 ⇒ 개정: 네거티브 방식)</li> </ul> <p>– ① 토지·건물 등 구축물, ② 차량·운반구·선박·항공기 등은 제외하되, ▪ <b>업종별 특성을 감안하여 일부 예외* 인정(공제 허용)</b> * 【예시】(건설업) 포크레인 등 중장비, (도소매·물류업) 창고 등 물류시설, (운수업) 차량·운반구·선박, (관광숙박업) 건축물 및 부속 시설물 등</p> <p>– <b>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는 제외하되, 일부 예외* 인정</b> * 【예시】중소기업의 대체투자, 산업단지 내 중설투자 등</p> <p>※ 일부 자산 제외 및 일부 예외 인정의 구체적 사항은 시행령·시행규칙에서 규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<b>(공제율) 당기분 기본공제(㉠) + 투자증가분 추가공제(㉡)</b></li> </ul> <p>– <b>(기본공제(㉠)) 당해 연도 투자액 × 기본공제율</b></p>
구 분	중소기업			중견기업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위기 지역	신규 상장	일반	위기 지역	신규 상장	일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공제율	10%	4%	3%	5%	4%	2% (수도권 1%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 분	중소 기업	중견 기업	대기업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① 연구시험용 및 직업 훈련용 시설	7%	3%	1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② 에너지절약시설	7%	3%	1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③ 환경보전시설	10%	5%	3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④ 근로자복지증진시설	10%	5%	3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⑤ 안전시설	10%	5%	1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⑥ 생산성향상시설*	7% (10%)	3% (5%)	1% (2%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 분	중소기업	중견기업	대기업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공제율	6%	3%	1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 분	중소기업	중견기업	대기업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공제율	10%	7%	5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

⑨ 초연결 네트워크구축 시설 투자세액공제 (§25의7)

구분	모든 기업
공제율	최대 3% = 2% + 최대 1% (전년대비 고용증가율 × 1/5)

- 일반 투자분 : 중소 10%, 중견 3%, 대 1%
  -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분\* : 중소 12%, 중견 5%, 대 3%
- \* 12대 분야, 223개 기술의 사업화시설(조특칙 별표 8의8)
- (추가공제(㉔)) [당해 연도 투자액
  - 직전 3년 평균 투자액]
  - × 추가공제율(모든 기업 3%)
- 추가공제액 한도 : 기본공제액의 200%

〈개정이유〉 기업투자 활성화 지원

〈적용시기〉 '21.1.1. 이후 소득세·법인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

〈특례규정〉 '20·'21년 투자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통합투자세액공제와 기존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중 선택 적용 허용\*

\* 기업은 현행 방식과 통합투자세액공제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, 투자자산별로 현행 방식과 통합투자세액공제를 구분하여 선택하는 것은 불인정

(2)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의 공제요건 폐지(조특법 §25의5, 조특령 §22의9)

현행	개정안
<p>□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공제대상) 신성장·원천기술*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</li> <li>* 12대 분야, 223개 기술의 사업화시설(조특칙 별표 8의8)</li> <li>• (공제요건) 다음 요건 모두 충족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직전연도 매출액 대비 R&amp;D 비중이 2% 이상</li> <li>② 직전연도 R&amp;D 비용 중 신성장 R&amp;D 비중이 10% 이상 (또는 자체개발 특허권 보유)</li> <li>③ 직전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을 것</li> </ul> </li> </ul>	<p>□ 통합투자세액공제로 통합하면서 공제요건을 폐지하고 재설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좌 동)</li> <li>• 공제요건 폐지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좌 동)</p>

〈개정이유〉 신성장기술 분야 사업화 지원

〈적용시기〉 '21.1.1. 이후 소득세·법인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

(3) 「조특법」상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 확대 (조특법 §144①)

현 행	개 정 안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□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대상) 납부세액이 없거나, 최저한세가 적용되어 공제받지 못한 세액 공제액</li> <li>• (이월공제기간) 5년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창업 초기 중소기업(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)의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: 7년</li> <li>■ R&amp;D비용 세액공제 : 10년</li> </ul> </li> <li>- 신성장·원천기술 R&amp;D비용 세액공제 : 10년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□ 「조특법」상 모든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을 10년으로 확대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좌 등)</li> <li style="margin-left: 40px;">• 10년</li> </ul> </li> </ul>

〈개정이유〉 세액공제의 실효성 제고

〈적용시기〉 '21.1.1. 이후 소득세·법인세 신고시 이월공제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분부터 적용

(4)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(법인법 §13·§76의13, 소득법 §45)

현 행	개 정 안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□ 결손금 이월공제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공제기간) 10년</li> <li>• (공제한도)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일반기업 : 소득의 60%</li> <li>- 중소기업·회생계획이행 중인 기업 등 : 소득의 100%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□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10년 → 15년</li> <li>• (좌 등)</li> </ul> </li> </ul>

〈개정이유〉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및 사업자 세부담 경감

〈적용시기〉 '21.1.1. 이후 신고하는 결손금부터 적용

(5)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확대 및 미공제 이월액의 손금산입 허용

(법인법 §57, 소득법 §57)

현 행	개 정 안
<p>□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방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한도* 내 산출세액에서 공제</li> <li>* 산출세액 × <math>\frac{\text{국외원천소득}}{\text{과세표준}}</math></li> <li>- 한도초과액 이월공제기간 : 5년 (추 가)</li> </ul>	<p>□ 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확대 및 미공제 이월액 손금산입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좌 등)</li> <li>- 5년 → 10년</li> <li>- 공제기간 내 미공제 외국납부세액 이월액은 공제기간 종료 다음 과세연도에 손금산입</li> </ul>

<개정이유> 국제적 이중과세 해소 강화

<적용시기> '21.1.1. 이후 소득세·법인세 신고시 이월공제기간(5년)이 경과하지 않은 분부터 적용

(6) 투자·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 (조특법 §100의32, 조특령 §100의32)

현 행	개 정 안
<p>□ 투자·상생협력촉진세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과세방식) A(투자포함형), B(투자제외형) 중 선택</li> <li>Ⓐ [당기 소득 × 65% - (투자+임금증가+상생)] × 20%</li> <li>Ⓑ [당기 소득 × 15% - (임금증가+상생)] × 20%</li> <li>※ 가중치 : (투자) 1 (임금) 2~3 (상생) 3</li> <li>• (환류 대상범위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투자)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금액 등</li> <li>- (임금증가) 총급여 7,000만 원 미만 상시근로자 임금증가액</li> <li>- (상생협력)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금 등</li> </ul> </li> <li>• (초과환류액 이월기간*) 1년</li> <li>* 기업소득을 초과하여 환류한 금액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다음연도의 미환류소득에서 차감</li> <li>• (적용기한) '20.12.31.</li> </ul>	<p>□ 제도 재설계 및 적용기한 연장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A(투자포함형) 기업소득 비중 조정</li> <li>Ⓐ [당기 소득 × 70% - (투자+임금증가+상생)] × 20%</li> <li>Ⓑ (좌 등)</li> <li>• 임금증가 대상 확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좌 등)</li> <li>- 총급여 8,000만 원 미만 상시근로자 임금증가액</li> <li>- (좌 등)</li> </ul> </li> <li>• 초과환류액 이월기간 확대 : 1년 → 2년</li> <li>• '22.12.31.</li> </ul>

〈개정이유〉 투자증가 유인 강화 및 임금증가 대상 조정 등을 통한 제도 합리화  
 〈적용시기〉

- (기업소득·임금증가) '21.1.1.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
- (초과환류액 이월) '21.1.1. 이후 신고하는 초과환류액부터 적용

(7) 국제거래 관련 자료제출 의무 체계화 및 자료제출 기한 연장 등 (국조법 §11, 국조령 §12)

현 행	개 정 안
□ 통합·개별기업보고서 제출 시 <b>국제거래명세서 등* 제출 같음</b> * 국제거래명세서(§11①단서),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(영 §7①3.) ※ 법인세 신고 시 별도 면제 확인서 제출 필요  □ 자료제출 및 신고의무 기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국제거래명세서 + 요약손익계산서                ⇨ <u>소득세·법인세 확정신고시</u></li> <li>• 해외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 신고제도                ⇨ <u>소득세·법인세 확정신고시</u></li> <li>•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               ⇨ <u>매년 6월말까지</u></li> <li>•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               ⇨ <u>사업연도 종료일 12개월 이내</u></li> <li>• 정상가격 사전승인 연례보고서                ⇨ <u>확정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</u></li> </ul>	□ 통합·개별기업보고서 제출의무자는 국제거래명세서 등 <b>제출의무 면제</b> ※ 면제 확인서 제출 불필요  □ 제출시기 연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<u>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6개월 이내</u></li> <li>• (좌 동)</li> <li>• <u>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</u></li> </ul>

〈개정이유〉 납세편의 제고 및 행정부담 완화  
 〈적용시기〉 '21.1.1.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